2026년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5. 28. 목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심동섭(분과위원장), 안우신, 정진근, 한승원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3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윤섭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제3호 :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92건(안건번호 제2026-83085호~8447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83085호~83095호(순번 1번~11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 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83096호~84476호(순번 12번~1392번)는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 등을 카페 및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12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여부(안건번호 제2026-107호~118호)

- 회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12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

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14건(안건번호 제2026-62호~7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62호~72호, 75호(순번 1번~11번, 14번)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6-73호~74호(순번 12번~13번)에 대해 일반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다수 혼재되어 있는 사이트로, 사이트 전체에 대하여 접속차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심동섭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동섭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특별한 의견 없음.

- 방윤섭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정보 중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심동섭 분과위원장: 제2호 및 제3호 안건 회의록 공개여부는 지난주와 같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제2호 안건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회의 부분 및 제3호 안건 접속차단 시정권고 부분은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방윤섭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OOOO', 'OOO', 'OOOOOO OOO'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심동섭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4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OOOO' 및 'OO', 'OOOO OOOO'를 통해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1개 안건, 11개 게시물임.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5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

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 중인 사안으로,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1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번~139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2,53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를 카페 및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모탈 컴뱃 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9번은 웹하드서 영화 '모탈 컴뱃 2'를 1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5. 6. 개봉하였으며, 현재 상영 중인 미국 영화임.

(방송 ‘디렉터스 아레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4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디렉터스 아레나’ 1화, 한편을 2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5. 15.부터 방영된 한국 예능프로그램임.

(방송 ‘예측불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55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예측불가’ 3화, 한편을 1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3. 13. ~ 5. 15. 간 방영되었으며, 현재 OTT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예능프로그램임.

(웹소설 ‘소드 오라토리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43번은 웹소설 ‘소드 오라토리아’ 1권~12권, 총 12권을 1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14. 7. 17.부터 국내 발간된 일본 소설로, 현재 총 15권까지 국내에서 발간되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를 카페 및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2번~1392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139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83085호~84476호(순번 1번~1392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심동섭 분과위원장: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후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기에 심의를 진행하는 안건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 명령 조치를 시행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래 12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후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음.
(긴급차단 조치 사이트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안건인 12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전송되는 복제물,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심의 대상 사이트 내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래 1.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한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12개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이후 URL의 숫자 부분 등을 변경하여 재운영되고 있음.
(접속차단 시정명령(긴급차단) 또는 시정권고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

면서) 해당 목록은 문체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하였거나 보호원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이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결된 사이트임.

채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과 같은 비교에 의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보호원에서 접속차단을 시정권고한 사이트 12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래 2)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전체가 기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콘텐츠 등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다음은 복제 · 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최초 명령한 34개 사이트 또는 그 후 대체사이트로 인정되어 긴급차단을 명령한 사이트 및 보호원에서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 중 URL 숫자 부분 등

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들임. 따라서 그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 지속적으로 URL 숫자부분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음.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저작물들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스트리밍 또는 링크나 다운로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접속차단 사이트와 심의대상 사이트의 동일성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사이트들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이트는 문체부의 긴급차단 명령 대상 사이트와 보호원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사이트 또는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사이트와 도메인명,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심의대상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별도 안내 페이지·팝업창 등을 통해 현재 또는 향후 대체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대체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접속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사이트 12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긴급차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12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107호~118호(순번 1번~12번)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o 제3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심동섭 분과위원장: 3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14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14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각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각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이용허락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판단됨.

각 심의 대상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거나,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등을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사이트의 트래픽 양이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각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은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

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접속차단 이외의 대체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방윤섭 전문위원: 사안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음.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 및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하면서 심의대상 사이트 내에서 직접 스트리밍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재생하는 형식으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2번~5번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임. 또한 이용자들이 검색창을 이용하여 손쉽게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사이트 메인화면과 각 게시물 내에는 광고가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번~5번의 채증자료 및 사이트 접속화면을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사이트는 운영자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또는 별도 저장서버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들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고 있는 점,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는 점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만화를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복제물등을 게시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사이트임.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만화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검색창을 이용하여 손쉽게 만화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일본 만화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 메인화면과 각 게시물 내에는 배너광고가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6번~9번의 채증자료 및 사이트 접속화면을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사이트는 만화의 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고 있는 점,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는 점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토렌트 파일 제공 사이트로, 운영자가 직접 토렌트파일을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신 또는 인기 저작물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두거나 유형별로 게시판을 나누어 토렌트 게시물을 게시하고, 사이트 메인화면에는 저작물 정보를 노출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OOOOO 대피소 주소 안내”라는 공지사항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운영자는 토렌트파일을 통하여 공유되는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토렌트파일 게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0번의 채증자료 및 사이트 접속화면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사이트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용자 등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고 있는 점,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는 점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토렌트 파일 제공 사이트인 ‘OOOO’

의 최신 접속 주소를 안내하는 사이트임. 심의 대상 사이트는 웹브라우져의 주소창에 기재하고 엔터키를 치면 바로 “OOOO.com”이라고 기재되면서 연결을 시도하고, 불법복제물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OOOO’의 접속 가능한 주소 및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음. 심의 대상 사이트를 통해 접속된 ‘OOOO’ 사이트에 ‘주소 패턴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https://OOOO.com 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명시한 점 등을 보면 심의 대상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침해사이트의 변경된 주소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링크의 접속 대상인 사이트들의 불법복제물등 전송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의 일환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그 밖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

번~1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 및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심의대상 사이트들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및 영상을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로 연결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2번~13번의 채증자료 및 사이트 접속화면을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사이트는 일부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일반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게시판이 혼재되어 있는 사이트로 사이트 전체에 대하여 접속차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접속차단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번은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심의대상 사이트인 불법 스포츠 중계사이트 'OOO'에서 해외축구, NBA, MLB, KBO 등의 실시간 스포츠 스트리밍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사이트명, URL, 유형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사이트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4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사이트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도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어, 불법 스트리밍 및 도박 홍보를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판단되며, 실시간 스트리밍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와 '전송' 해당 여부 등에 일부 법적 쟁점은 존재하나, 침해의 반복성·중대성 및 권리보호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한 점, 일부 비침해 정보에 대한 과차단 우려는 있으나, 불법 중계 제공이 사이트의 핵심 기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14번의 심의대상 사이트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순번 1번~9번의 경우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게시할 수 없는 것인가.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번~9번의 사이트에는 운영자가 직접 게시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웹하드처럼 주로 이용자가 올리는 것은 아니고, 운영자가 스트리밍 하는 상황인 것인가.

- B 위원: 일반인들이 게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사이트의 형태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순번 11번의 경우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접속차단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 방윤섭 전문위원: 기존 심의에서 다루었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의 경우 국내 블로그 등의 게시물이었으나, 순번 11번의 경우 해외사이트임.

- B 위원: 순번 14번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시 공중송신에 포함되는 분류 중 영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음성송신만 들어가 있어 비판이 많았음.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엄격하게 하면 제외해야 하나, 유사 송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 B 위원: 순번 14번의 경우 공중송신 중 기타의 공중송신에 해당되고, 침해가 맞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순번 14번의 경우 도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접속차단 심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보임.

- 방윤섭 전문위원: 해당 부분은 참조적으로 기재한 부분임. 유사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음.

- 심동섭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14번의 심의대상 사이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순번 1번~11번, 14번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이고, 순번 12번~13번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 14번의 심의대상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순번 12번~13번의 심의대상 사이트는 부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62호~72호(순번 1번~11번)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6-73호~74호(순번 12번~13번)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6-75호(순번 14번)의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심동섭 분과위원장이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6. 4.

분과위원장　　심동섭

위원　　안우신

위원　　정진근

위원　　한승원